

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

****참여전,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9 강서구 하반기 취업박람회



참가대상

참가방법

문의전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누구나

행사 당일 신분증, 이력서 지참 후 참여 가능

강서구 일자리센터
02-2600-6250, 6519, 6520

채용관

부대행사

참여업체별 현장면접(10개)

취업상담
직업선호도검사
이력서 사진촬영
지문적성검사
면접 이미지메이킹

일시	2019. 12. 11.(수) 14:00 ~ 16:00		
장소	공달래문화복지센터 7층 강당(강서로5길 50)		
참가대상	직원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체(사업체) 및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행사구성	현장면접 및 기타 부대행사		
주최	강서구청		
주관	강서구 일자리센터		
기업신청기간	2019. 11. 29.(금) 까지	개인신청기간	행사당일 참석
문의처	02-2600-6519	FAX	--
담당자		E-MAIL	@
사이트(출처)	http://job.seoul.go.kr/gangnam/re/custmr_cntr/ntce/RegionNotice.do?method=getRegionNotice-iceCmmnSeNo=1&fileyn=Y&bbscttSn=13258		

*자료출처

:

http://job.seoul.go.kr/gangnam/re/custmr_cntr/ntce/RegionNotice.do?method=getRegionNotice-iceCmmnSeNo=1&fileyn=Y&bbscttSn=13258

□ 제3회 고요한택시 취업설명회

GOYOHAN TAXI

제 3회 고요한택시 취업설명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고요한택시가
따뜻한 마음으로 승객과 소통할 기사님을 모집합니다.

주요내용 고요한택시 서비스 소개 및 현장채용면접 진행

참가대상 서울시 및 경기도 거주 청각·언어 장애인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일시 2019년 12월 14일 (토) 14시 ~ 16시 30분

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 세미나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1층)

모집기간 2019년 11월 4일 10시 ~ 2019년 12월 12일 18시

신청방법 1. '고요한택시 홈페이지' 방문 및 신청
2. 행사 당일 현장 방문 및 접수

문의 070-7114-0418(문자가능)

주최·주관 CO:ACTUS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

협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

일시	2019년 12월 14일 토 14시~16시30분		
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 세미나실(남산스퀘어 11층)		
참가대상	서울시 및 경기도 거주 청각, 언어장애인 (운전면허2종보통이상소지자)		
행사구성	현장면접		
주최	코엑터스(주)		
주관	코엑터스(주)		
기업신청기간	.	개인신청기간	행사당일 참석
문의처	070-7114-0418	FAX	--
담당자		E-MAIL	@
사이트(출처)	http://www.goyohantaxi.com/job-fair		

*자료출처 : <http://www.goyohantaxi.com/job-fair>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앞서 다양한 취업지원 우수모델 발굴·확산
- 참여자는 비참여자 대비 취업률 10.1%p, 월임금 10만원 상승
- 이재갑 장관, 성과 보고회 후 현장을 방문하여 취업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 밝혀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성과 보고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월 27일 오후 1시 40분에 포항고용센터에서 지난 7월부터 운영해 온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의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시범센터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의 취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 우수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 지원(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가 밀착 상담을 통해 대상자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의 구직활동 상황을 엄격히 점검할 것을 권고(2018 OECD New Jobs Strategy)
-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하반기 제도 시행을 목표로 지난 9월에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 이번 성과 보고회는 이재갑 장관이 주재하고 시범센터(부산, 전주, 포항, 김해) 담당자, ‘고용-복지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이 참석했다.

- *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회원사 10개소를 통해 고용 측면에서는 근로 경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복지 측면에서는 **사회공헌기금** 출연, 의료 서비스 등 제공
 - ↳ **사회공헌기금**: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10개 회원사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기금(2천만 원)

- 성과 보고회에서는 시범센터의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취업률 등 취업 성과를 비교하고 각 센터별 중점 과제 추진 성과 및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시범센터 주요 추진사항]

- 지난 7월 초에 부산·전주·포항·김해 고용복지+센터를 시범센터로 선정하여 약 4개월간 운영했으며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추진 경과 상세 내용

- 첫째, 밀착 상담 강화와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상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상담 횟수·시간**을 늘렸다.

* 센터별 1~2명씩 총 7명 추가배치(센터별 기존 상담인력의 10%~3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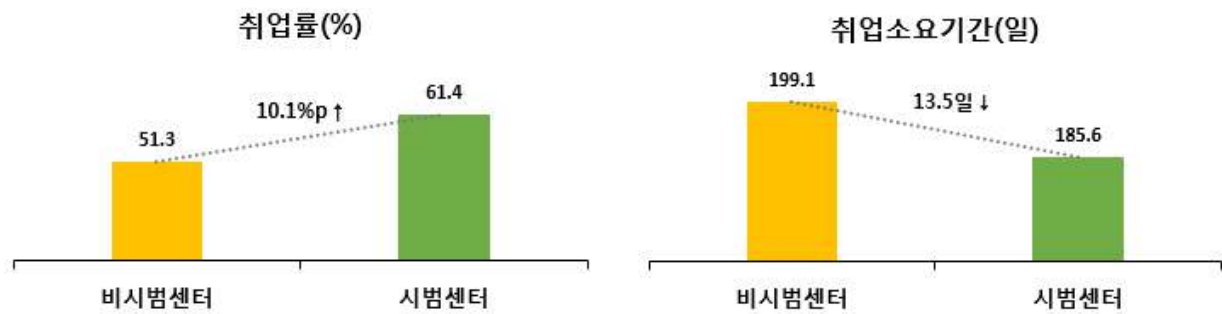
** (비시범센터 ↔ 시범센터 참여자 평균) ▲상담횟수(회): 13.6 ↔ **18.1**(4.5회 증가)
 ▲1회당 시간(분): 18.1 ↔ **22**(3.9분 증가) ▲총 시간(분): 246 ↔ **398**(152분, **61.8%** 증가)

- 둘째,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다양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 셋째, 농촌 등 고용복지+센터와 멀리 떨어진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출장 상담 서비스를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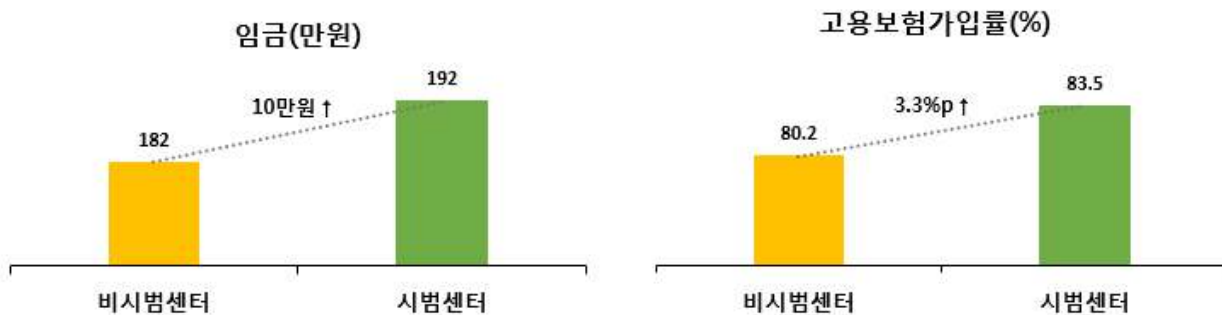
[시범센터 운영 성과 및 우수 사례]

- 시범센터 참여자의 취업 성과를 비참여자와 비교한 결과,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적 측면에서, 참여자의 취업률은 비참여자 대비 10.1%p 상승한 61.4%였고, 취업소요기간은 13.5일 단축된 185.6일이었다.



- 질적 측면에서, 참여자의 임금은 비참여자 대비 10만원 높은 192만원이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3.3%p 상승한 83.5%였다.



* 시범센터를 전체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할 경우 약 2,850억 원의 편익 발생 추정

□ 시범센터별 취업지원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산고용복지+센터 우수 사례> 일자리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 'ㄱ'은 조리분야 취업을 희망하나 **자격증, 관련업종 취업경험**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음**
- 상담사는 이러한 'ㄱ'의 상황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와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내 조리 관련 사회적기업의 **단시간 일자리를 찾아 알선**
- 'ㄱ'은 알선 받은 **사회적기업에 취업**하여 **근로 경험을 쌓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아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 후 전일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

<포항고용복지+센터 우수사례> 민간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망 구축·운영

- 'ㄴ'은 아버지의 투병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 면접에 어려움을 겪어 **전문 컨설팅 서비스** 수강을 **희망하였으나 비용이 비싸 포기**
- 상담사는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생계비 3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 면접 컨설팅 회사**와 협력하여 면접 컨설팅 **교육비 30만 원 추가 지원**
- 'ㄴ'은 비용 부담을 덜고 의사소통 역량 강화, 이미지 메이킹, 면접 영상 분석 등 전문 면접 교육 수료 → **회계사무원 면접을 통과하여 취업 성공**

<전주고용복지+센터 우수사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 'ㄷ'은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가 출장 상담소에 참여
- 'ㄷ'은 자녀 양육 문제로 장기간 집을 비우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집과 2시간 정도 떨어진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음
- 출장 상담으로 집 근처 출장 상담소에 참여했고, 한부모 지원 시설, 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안정적 구직활동 → 거주지 근처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일자리를 알선받아 취업

<김해고용복지+센터 우수사례> 심층 분석(프로파일링) 서비스 제공

- 'ㄹ'은 고교 졸업 후 해외에서 일하던 중 건강 문제로 귀국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 심층상담을 통해 'ㄹ'이 무인기(드론)에 흥미가 있고 지식도 많아 관련 업종 취업 역량은 높았으나, 오랜 해외 생활과 건강 문제로 취업 의지가 낮아진 상황임을 파악
- 취업의지 제고를 위해 청년직업지도(CAP+) 프로그램을 연계해 또래 구직자와의 소통을 늘리고 지역 보건소와 매달 건강 상태를 확인
- 지역 내 관련 일자리 지속 알선 → 'ㄹ'도 의욕적으로 구직 활동한 결과 무인기(드론) 조종사 취업

[앞으로의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의 문제점을 개선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법률안 제정, 취업 지원모델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논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 특히, 경사노췌에서의 노사정 합의(2018.8., 2019.3.), '소상공인연합회'의 입법촉구 성명(2019.10.29.)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이번 시범센터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상별 취업지원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대상별 취업장애요인 해소방안 마련,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고용-복지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 기관 협업 강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고용복지+센터에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여 밀착 상담을 강화하고, 중형 고용센터 설치 및 출장소 운영*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서비스 접근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 (정부안) 중형고용센터 31개소 설치, 이동 출장소 40여 개소 운영

□ 한편, 이재갑 장관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청·장년층이 다수 취업*한 기업체인 (주)티시테크를 방문했다.

* 노동자 160명 가운데 취성패 지원을 받아 취업한 청년 9명·중장년 1명 근무 중

□ (주)티시테크는 미니·소형 굴삭기를 생산하는 포항 지역의 중소기업이다.

○ 해당 업체는 사원 복지관에 헬스장*을 갖추고 지역 내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원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 헬스 트레이너 상주, 정기적인 체력 측정 및 운동 프로그램 지원

○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업무 과정에서 교대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중장년층이 원하는 근무여건을 갖추고 있다.

□ 현장 간담회에는 (주)티시테크의 경영진과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통해 이 사업체에 취업한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 (주)티시테크 대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오랫동안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감사를 표했다.

○ 노동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아 지게차·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취업 및 이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목돈을 마련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맞춤형 심층 상담도 강화되어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도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재갑 장관은 (주)티시테크가 어려운 제조업 경기에도 불구하고 청년·중장년 고용을 창출한 점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

-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상담 시간을 대폭 늘려 밀착 상담을 강화함으로써 구직자들이 취업 역량을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을 갖추 수 있는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또한 “정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30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제 시행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 “다만 입법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규 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충분한 제도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추진경과(1쪽)

<붙임2> 취업성공패키지 개요(1쪽)

<붙임3>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1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원빈 사무관(☎044-202-7375), 송주현 사무관(☎044-202-73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 전주, 포항, 김해 고용복지+센터 선정(7.8) → 착수 회의를 통해 시범센터 운영방향을 다음과 같이 논의·확정(7.25)

【 운영 방향 】

- 첫째, 상담인력을 대폭 늘리고, 상담횟수·시간을 증가시켜 밀착상담을 강화하고, 참여자의 취업장애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
- 둘째,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를 다양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확대
- 셋째, 농촌 등 격오지에 대해서는 출장 상담소 운영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기본방향을 토대로, 각 시범센터는 지역여건을 감안, 다음 중점과제 추진

- (공통) 상담인력 추가 배치(센터당 1~2명) 및 상담횟수 및 시간* 확대

* (비참여자 ↔ 참여자 평균치 비교) ▲ 상담횟수(회): 13.6 ↔ **18.1**(4.5회 증가)

▲ 1회당 시간(분): 18.1 ↔ **22**(3.9분 증가) ▲ 총 시간(분): 246 ↔ **398**(152분, **61.8% 증가**)

- (부산고용복지+센터) 구청과 일자리 공유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업 기반 존재 → 일자리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이에 따라, 구청, 센터 내 타부서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자리 발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일자리 풀(Pool) 대폭 확대

* 협약을 체결한 8개 구청(남구, 동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부산진구)과 월 1회 실무협의체 운영, 센터내 타 부서(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와 주 1회 회의

** 지역 사업장 방문, 온라인 구인정보 수집 등 일자리 추가발굴 노력

- (포항고용복지+센터)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지원을 위한 민간 협의체 활동 중 → 민간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운영

* ▲ 복지: 경북포항의료원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출연기금 2천만원으로 구직자 생계지원

▲ 고용: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근로경험 프로그램'과 민간 전문업체의 면접 컨설팅 서비스 연계

- (전주고용복지+센터) 관할 내 농촌 등 고용서비스 취약지역이 넓게 분포 → 서비스 접근성 제고방안* 추진

*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상 떨어진 무주군, 완주군을 방문 주 2회 '찾아가는 출장상담 서비스' 진행

- (김해고용복지+센터) 유형별 전담 상담제 운영을 추진한 경험 → 참여대상별 심층 프로파일링 서비스 제공

* (예시) ▲ 취업역량이 높은 청년: 자기소개서·면접 코칭 서비스, 취업알선을 집중 제공

▲ 취업역량이 낮거나 고령층: 시청 복지팀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 복지기관 직업훈련 연계

□ 사업개요

- (개요) 미취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의욕 제고(1단계) → 직업능력 개발(2단계) → 취업 알선(3단계)'을 맞춤형으로 제공
 - 1단계: 진로 상담, 취업역량 직업심리 검사,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 수립
 - 2단계: 직업 훈련, 일 경험, 해외 취업 등 직업능력 향상 과정 참여
 - 3단계: 취업 알선, 이력서·면접 상담 등 구직기술 향상, 동행 면접 등
- (지원대상) 만 18~69세 저소득 구직자 및 미취업 청·장년 등
 - I 유형(고용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및 특정계층*
 - *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15~24세),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
 - II 유형(민간위탁): 청년(18~34세, 소득 무관) 및 중장년(35~69세, 중위 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단계별 취업 지원 과정과 구직 촉진을 위한 수당 지원

구분	1단계 (상담·진단)	2단계(직업능력향상)	3단계(취업알선)
I 유형	•3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	•최장 8개월 •훈련비 300만 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10%) •참여수당 최대 40만 원(6개월)	•최장 3개월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구직촉진수당 30만 원 최대 3개월
II 유형	•1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 20만 원	•최장 8개월 •훈련비 200만 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5~70%) •참여수당 최대 40만 원(6개월)	•최장 3개월

1. 추진배경

-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하여 고용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다만, 고용보험제도 밖에 존재하는 취업자가 상당수(전체 취업자 약 2,700만 명 중 약 1,200만 명, 45%)에 이르고, 고용보험 가입된 이직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1/5 수준에 불과(2018년 139만 명)하여 한계 노출
 - ⇒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 →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추진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 강화
 - 소득지원대상은 ^{연령}만18~64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자(고액자산가 배제, 6억 원 범위 내 결정)
 - * 단,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120% 이하까지 참여 허용
- (지원내용)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 ①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구직활동기간 중 ②구직촉진수당(월50만×6개월) 지급
- (지원규모) 2020년부터 시행하되, 기준중위소득 상한 확대(50→60%)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지원규모 6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 * 지원규모: (2020) 35만 명 → (2021) 50만 명 → (2022) 60만 명
- (전달체계·인력) 고용복지+센터 담당, 밀착상담 강화 등 상담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3. 추진계획

- (입법) 경사노위 사회안전망위원회 합의(3.5) 토대로 입법예고(6.4~7.15) → 국무회의 의결(9.10) 및 국회제출(9.16) → 정기국회 법안 통과 추진(~12월) → 2020년 하반기 시행
- (인프라) 예산·소요정원 관련 관계부처 지속 협의, 전달체계 개편 등 심층검토 사항은 연구용역(2019.3~12 노동研) 등을 통해 연중 검토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개 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 년)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 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 (기 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 **[지원방식]**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기업은 2년 500만원 또는 3년 75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

□ **[중도해지]**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

- (본인 납입분)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환급**(해지사유 무관, 2, 3년형 동일)
- (기업 기여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 (정부 지원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
(2년형은 50%, 3년형은 30% 수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총 4개소]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주)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02-2006-9583)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02-3399-7651)
인크루트알바콜(주)서울북부지사(02-2186-9059)	(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02-6959-5570)

2019 기업지원제도 안내

1. 일자리안정자금

- ❖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월보수액 210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5인미만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구 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지원대상 사업주	• (원칙)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예외로 지원) ①공동주택 경비·청소,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자활 기업,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②300인 미만 사업장 55세 이상 고령자 ③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 지원제외: ①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초과), ②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국가 및 공공기관, ④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 등), ⑤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⑥안정자금 지원기간 동안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으로 퇴직시킨 사업주
지원가능 근로자 (지원요건)	•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일·숙직비,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 월10만원 이하의 식대·경조사금액·자녀보육수당, 단순노무직이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240만원 한도) • 고용보험 가입 및 1개월 이상 고용유지(단,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무) • 월평균보수 최저임금 이상, 기존근로자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제외: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5만원 지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신청서식	①'18년 계속 지원 사업장 ⇒ 최저임금 준수확인서 제출(별도 신규신청 절차 없음) * 일반사업장은 '19.2.28까지, 공동주택은 '19.1.31까지 제출 ②'19년도 최초로 신청한 사업장 ⇒ 연 1회 신청('19.1.1~12.13)으로 연간 자동 지급 • 고용보험 기성립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안정자금 신청 체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 고용보험 신규성립 :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안정자금 신청 체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 두루누리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희망서(두루누리 사업장용) ☞ 근로자 추가 신고: (입사)취득신고서에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퇴사)상실신고내역 자동 반영
신청방법 · 지급	• (온라인신청)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 (오프라인신청)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방문·우편·팩스 • (지급방법)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지급시기) 월 1회 지급(매월 15일)

신청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꼭 알아야 할 사항!



01.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부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02. 누가 혜택을 받나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임수가 25만원 미만인 근로자(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5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대상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매달매달 계속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퇴직한 자(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 없음)

지원대상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퇴직·임대·사망자의 제외

03. 어떻게 지원받나요?

사업주가 운영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에서 해당 월보 고용보험료를 법정납부기일까지 납입하면 그 다음 달 월보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명세서로 지원합니다.

Tip

**내 일터의 사회보험 부담(의무)이
이렇게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제자에서 기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기업·사업장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 고용·사회보험 대가입 신고명단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wfnet.or.kr)
- 국민연금 기업지원·신고센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go.kr)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어떻게 받으세요?



01. 신청방법

- 온라인** 4대사회보험료지원센터(www.4insure.or.kr) 신청사항 입력
- 서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접수(행정안전부·국세청)

02. 제출서류

- 신규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
- 법인등록사실서·배당신고서·보험료계정입상고지서
- 기존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03. 신청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를 주시면
방문하여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을
도움드릴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콜 센터 1568-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155

**회차입금 인상에 따른·연건비 부담
일자의 한정자금을 신청하세요.**

보험 지원 고용사업주에게
월평균임수 25만원 이하 근로자 1명당
월4000원(연48000원) 지원 사업제한 15만원 지급

- 1. 연액 4대 사회보험료는 2월~5월 납치연월차금 총액까지
- 2. 서면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고용연차
- 3. 보험 4대 사회보험 콜센터 1568-0075

급여항목 **일차적 안정자금**을 검색해보세요.

3. 기업지원 사업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 * 주요지원내용 붙임 참고

1	고용창출장려금	①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심사형, 요건형), ②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심사형), ③국내복귀 기업 지원(심사형), ④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심사형), ⑤고용촉진장려금지원, ⑥청년추가고용장려금
2	고용안정장려금	①정규직 전환지원(심사형), ②시간선택제 전환지원, ③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심사형), ④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3	고용유지지원금	①고용유지지원금, ②무급 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4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	①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②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중복지원 사업 대상

양 장려금	중복 시	지원 비율
일자리 함께하기 (100% 지급)	고용창출장려금	+ 70% 추가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100% 추가지원

○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2-2171~1800~5, 1833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8층)

●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 검색

○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고창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공모형)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 40만원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3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40만원, 1~3년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기업규모 관계없이 월 6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10만원
	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고안 장려금	정규직 전환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주당 5~10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기업당)
고유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 육아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육아휴직 등 부여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월30만원(대규모기업 제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대규모기업 10만원)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사항 별도 문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지원사항 별도 문의
장년·고령자 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3년간 임금을 지원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지원수준]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27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대규모 기업 10%) 한도,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18년도 24만원) · 18개월 이상 근무한 만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지원수준] 근로자: 감액금액의 1/2, 연간 1,080만원 한도(최대 2년), 사업주: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최대 2년)